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원 자 력 안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에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변동되는 위탁 업무량 기준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허가시설별 정액제 등으로 개선하며, 납부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56조)

위탁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별 건설·운영·해체(폐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한 ‘개별적 산정기준’으로 구분하고, 부담금 납부규모 현실화를 위해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명시함

나.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안 제156조의2)

기관별·업무별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현행화함

다. 이의신청(안 제156조의3)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라. 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56조의4, 제156조의5)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내에서 일일단위 부과요율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업무

제155조의2제1호 중 “인가·허가·지정·등록·면허”를 “인가·허가·
등록·면허”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
무

제156조제1항 중 “산정기준”을 “시설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개별적 산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1월 31일까지 고시”를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
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3조의2제1항,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6조제1항, 법 제60조제1항, 법 제61조제1항, 법 제70조제3항,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75조제1항, 법 제76조제1항, 법 제77조제1항, 법 제77조의2제1항, 법 제77조의3제1항,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80조제1항,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사전검토·등록·검사·승인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00조제1항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개별적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소요되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 3년마다 조정한다.
1. 제4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결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56조의2제2항 각 호의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까지”를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납부”를 “일시납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를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허가·승인·신고·검사·등록 및 사전검토 등의 개시 전 까지. 다만, 영 제75조, 제88조, 제90조, 11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를 적용한다.”로, 제2호 중 “제156조제2항제1호”를 “제156조제2항제3호”로, 제3호 중 “제156조제2항제2호”를 “제156조제2항제5호”로, 제4호 중 “제156조제2항제3호”를 “제15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이동한다.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과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징수유예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별표 10의2와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별표 10의2과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1. 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인가·허가·지정·등록·면허의</u>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1. ----- ----- ----- ----- ----- ----- ----- <u>인가</u> <u>· 허가· 등록· 면허의</u>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법 제1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u>부과·징수에 관한 사무</u>
<u><신설></u>	7.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u>강제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무</u>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u>산정기준은</u> 별표 10의2와 같다.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 ----- ----- ----- ----- <u>시설별 산정기준은</u>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u>금액은</u> 별표 10의3과 같다. <u><신 설></u> <u><신 설></u>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관독업무자가 관독한 방사전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u><신 설></u>	② ----- -----<u>개별적 산정기준</u> 은 -----. 1.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3조의2제1항,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6조제1항, 법 제60조제1항, 법 제61조제1항, 법 제70조제3항,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75조제1항, 법 제76조제1항, 법 제77조제1항, 법 제77조의2제1항, 법 제77조의3제1항,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80조제1항,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사전검토·등록·검사 및 승인 등에 관한 업무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법 제100조제1항 특정기술주제 보고서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

현행	개정안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u><신 설></u>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u>고시</u>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u> 협의하여야 한다.	5. (현행 제2호와 같음) 6. (현행 제3호와 같음) 7.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u>개별적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u> ③ ----- -----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u>통지</u>-----.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소요되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 3년마다 조정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 1. 제4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u>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u> 2. 산정기준 설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

현행	개정안
	<u>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u>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삭 제>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삭 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 일시납 분-----.

현행	개정안
1.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1.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허가·신고·사전검토·등록·검사 및 승인 등의 개시 전까지. 다만, 영 제75조, 제88조, 제90조, 제11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를 적용한다.
2.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제156조제2항제3호----- -----
3.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가. 교육 신청 시 나. 보수교육 실시 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5호----- ----- ----- 가.·나. (현행과 같음)
4.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4. 제156조제2항제6호----- ----- ----- ----- -----.

현행	개정안
④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설>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과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현행	개정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연장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별표] 별표 10의2 및 10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부담금의 시설별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유한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에 용량계수 및 산정지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Sigma(\text{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times \text{용량계수} \times \text{산정지수})$$

비고

1. “허가시설”이란 전년도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법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가. 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
나.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
다.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를 받은 대상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을 받은 대상 시설(이하 “핵연료주기시설등”이라 한다)
라. 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
2. “운영단계”란 해당 허가시설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별로 구분한 단계를 의미하며, 세부구분 및 기준일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란 다음 산식에 따라 구한 금액으로 위원회가 고시한 값을 의미한다.

$$\text{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 \frac{\sum_{i=1}^3 \left(\frac{\text{시설당 직접비용}}{\text{직접규제비용}} \right)_{t-i}}{3}$$

(※ t는 부과대상 연도의 전년도를 의미한다.)

- 가. “직접비용”이란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로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시설 안전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사업(이하 “직접규제사업”이라 한다.)의 결산 기준 실행행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제2항의 개별적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사업 내역에 소요된 실행행금액은 제외한다.
- 나. “직접규제비용”이란 해당연도 전체 기금사업의 실행행금액 대비 직접규제사업의 실행행금액 비율을 말한다.

다. 각 허가시설 운영단계 중 기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실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부담금 납부실적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용량계수”란 허가시설에 대하여 시설별로 허가받은 용량으로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의미한다.

구분	시설용량(단위)	용량계수
발전용원자로시설	열출력량(MWt)	0.40~1.60
연구용등원자로시설	열출력량(MWt)	0.20~1.00
핵연료주기시설등	저장용량(MTU)	0.30~1.70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보관용량(L)	0.40~1.60

5. “산정지수”란 통계청이 공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하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최초 부과 또는 산정기준을 변경한 경우의 산정지수는 ‘전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 × (1+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로 한다.

$$\text{산정지수} = \text{전년도 산정지수} \times (1 + \text{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3]

부담금의 개별적 산정기준(제156조제2항 관련)

-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신고·사전검토·등록·검사 및 승인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에 대한 위탁기관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값
-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독업무자가 관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분기별 1명당 5천원
- 제15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1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1) 공통과정	193,000
	2) 전문과정	107,000
	3) 실습과정	128,000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 공통과정	193,000
	2) 전문과정	107,000
	3) 실습과정	128,000
다.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70,000
라.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70,000
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70,000
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70,000

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70,000
---------------	--	---	--------

6. 제1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
가. 수출입신고 요건확 인	1)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3.0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 소가 내장된 기기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2.5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3)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 사선발생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나. 수출입신고요건확 인 면제	1) 방사성동위원소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3.0원
	2) 방사선발생장치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비고

가. 환율은 매분기 첫째 날 하나은행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나. 수출품목 중 수입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수출가격에서 수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수출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부담금은 신고 건당 200만원 이하로 한다.

7. 제15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개별적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부담금 :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